I.o.T (사물인터넷) 설치
및
관할구청 지원사업 신청 방법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부산광역시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T. 861-1846, F.861-1765)

목 차

제1장 개 요·····5

제2장 보조사업 추진·····6

제3장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등·····7

제4장 방지시설 및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8

제5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9

제6장 부착기한·····10

제7장 관할구청 신청 방법 및 절차·····10

제8장 IoT Gateway 제조사 정보·····11

제9장 부착 후 관리·····12

※ 그린링크 사용방법·····13

제1장 개 요

가. 목 적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

나. 근 거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환경부훈령 제1524호, 2021.12.20.) (이하 “보조금지급규정”이라 한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세부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했다.

★ 공포 후 새로 설치되는 사업장의 경우 4종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 30일까지, 개정내용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다. 2023년 사업계획

□ 사 업 비 : 212,000백만원

○ 국비 106,000백만원, 지방비 84,800백만원, 자부담 21,200백만원

□ 사업방식 : 자치단체 자본보조

□ 예산부담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제2장 보조사업 추진

가. 보조사업 수행기관

□ (환경부) 사업 추진방향 설정, 사업관리 및 예산편성 등

□ (유역·지방환경관서) 보조금 교부, 집행사항 관리 및 정산 등

□ (지자체) 수요조사, 예산 및 보조금 신청, 예산집행, 사업 추진사항 관리, 정산자료 제출 등

나.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 등

□ (집행계획 수립) 지자체장은 2023년도 보조사업 계획수립 시 지원대상 사업장 현황 및 사업물량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집행계획 수립

□ (지방비 보조) 지자체장은 국고보조금 집행 시 지방비 보조금 비율(40%) 이상의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함

□ (집행 준수사항) 지자체장은 보조금 집행 시 대기환경보전법, 보조금법및 동 지침, 보조금지급규정 등에서 정한 사업집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다.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 교부결정 취소 등

□ (교부신청 및 교부) 지자체장은 매월 시작 10일 전까지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서식1)를 관할 유역(지방)환경관서장(이하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 기관 >

유역(지방)청	지자체	유역(지방)청	지자체
수도권청	서울, 인천, 경기	원주청	강원, 충북(충주, 제천, 괴산, 음성, 단양)
낙동강청	부산, 울산, 경남(하동, 남해 제외)	대구청	대구, 경북
금강청	대전, 세종, 충남, 충북(원주청 관할 제외)	전북청	전북
영산강청	광주, 전남, 제주 경남(하동, 남해)		"여 백"

제3장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등

가. 방지시설

□ 시설별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3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2.7억원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응축시설(수냉식) 설치비 한도 최대 6.2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5.6억원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3.6억원 - 필요 시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6.2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설치비 보조금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부착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구분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전류계*	배출시설	30	27	15	12
	방지시설	30	27	15	12
차압계 (압력계)		40	36	20	16
온도계		50	45	25	20
PH계		100	90	50	40
IOT게이트웨이		160	144	80	64
VPN		40	36	20	16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제4장 방지시설 및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가. 보조금 지원(제외)대상 및 지원조건

①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 (우선지원) 아래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우선 지원(지자체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를 정할 수 있음)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③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④ 보조금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 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제5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지원대상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상태확인을 위한 4개 종류 측정기기(전류·압력·pH·온도)를 시설 특성에 따라 부착

측정기	전류계	차압계	pH계	온도계
부착 시설	• 배출시설 • 방지시설	• 여과집진 • 흡착시설	• 흡수시설	• 여과집진 • 흡착시설
주요 기능	• 배출시설, 방지시설 가동여부 확인	• 방지시설 가동, 상태정보(여과재 상태, 흡착제 충전 등) 확인 * 차압계(여과집진, 흡착), pH계(흡수), 온도계(연소, 반응)		
실물 형태	 직경 4~10cm	 10~20cm	 10~20cm	 직경 8~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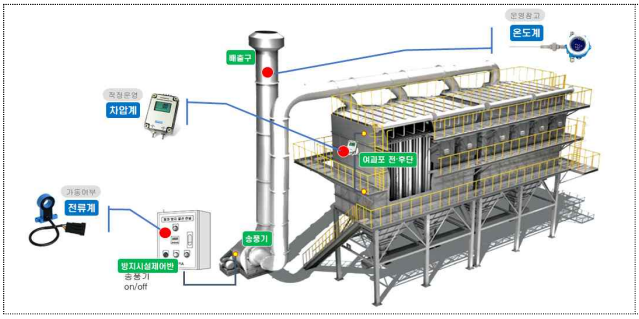

<여과집진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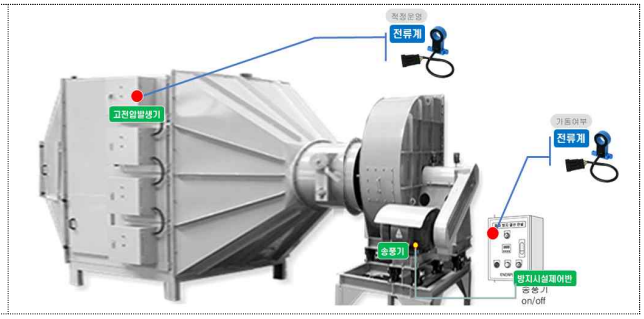

<전기집진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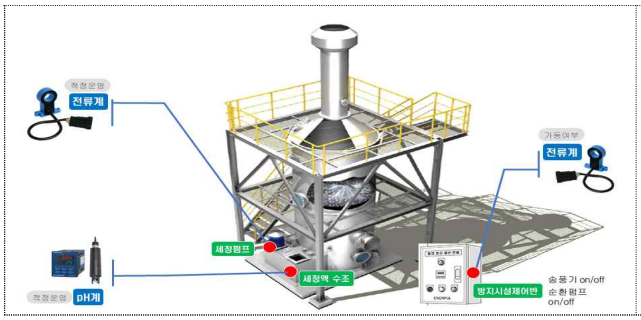

<세정(흡수)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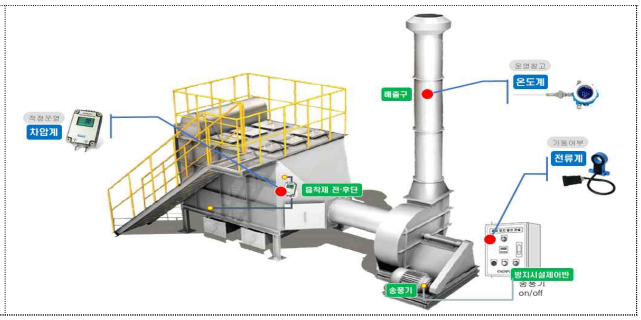

<흡착시설>

제6장 부착기한

배출시설 가동개시일을 기준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 제 2조 개정일(‘22.5.3)로 구분하여 사업장별 부착기한을 정한다.

대상	배출시설 가동일	부착 기한
4종 사업장	2022.5.3. 이후	‘23.6.30 까지 부착
5종 사업장		‘24.6.30 까지 부착
기존 사업장	2022.5.3. 이전	‘25.6.30 까지 부착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면제(시행령 [별표 3의2])

1) 방지시설이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구와 연결된 경우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전력을 동력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3) 고정적인 전기사용 장치를 확인할 수 없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4) 방지시설과 연결되는 배출시설이 복수인 경우로서 배출시설의 통합전원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사유로 배출시설 중 일부에 사물 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을 면제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5)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할 계획이 있는 경우
6)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사업장의 특성 등을 고려한 경우

제7장 관할구청 신청 방법 및 절차

가. 사업신청

1)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 방문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지참하여 직접 방문

나) 우편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운송료 응모자부담)
전자우편 접수 가능

2) 주요구비서류 2부[원본1부, 사본(스캔본, 현장조사용) 1부]

→ IoT업체에서 행정업무 지원

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붙임3】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붙임4】

③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포함 1부

* 공사원가계산서를 '21년 물가정보, 적산정보, 건설·기계품셈에 맞게 작성

④ 사업장 위치도

⑤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⑥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외국인이 업주인 경우 사후 유지관리의무 3년을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국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함

⑦ 중소기업확인증 1부(중소벤처기업부 발행)

⑧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1부

⑨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1부

제8장 IoT Gateway 제조사 정보

구분	제조사명	대표번호	이메일	주소
영남권	대원지에스아이	054-973-2221	daewon6@daewon.com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아곡 6길 42
	대한인더스트리	051-928-0308	daehan0308@naver.com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로 15 (석대동)
	KSG기술환경	055-351-4646	ksq@ksgplant.co.kr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농공단지길 100
	KEFA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	070-4287-9557	kefa@ke-fa.com	경남 창원시 진해구 두동 1296-15 청안프리존 빌딩 502호

※기타업체

제조사명	연락처	주 소	비 고
㈜크린어스	051)5020-1900	부산시 강서구 호계로57번길57	부산시 매연저감 생산업체 담당자 : 조현호

제9장 부착 후 관리

가. 의무사항

- 보조금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이상 의무 운영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

☞ 별도 조작없이 데이터 자동 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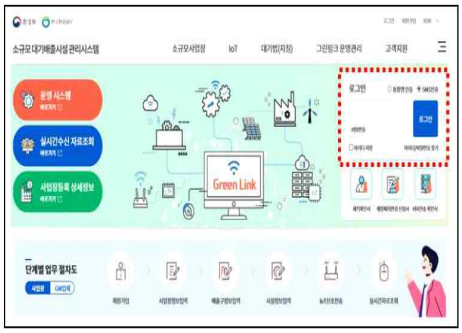

나. 고장 시 대처방안

1) 부착업체에 내용을 전달하고 AS서비스 지원
2) 수리 후 관리시스템에 자체개선계획서 제출
(업체별 행정지원 차이가 있습니다.)

※ 그린링크 사용방법 - 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1. 신규가입

1) 그린링크 콜센터(1533-3301) 연락 후 사업장 정보등록 이후 회원가입

설치업체 가입 시 유의사항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입니다.

설치업체(제조사, 협력사) 관리 프로그램 개편과 관련하여, 신규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규 가입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규 가입하시는 설치업체(제조사, 협력사)는 그린링크 콜센터(☎1533-3301)로 연락하신 후
사업장 정보등록 이후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문의가 있으실 경우, 콜센터 (☎ 1533-3301)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이버, 구글에서 '그린링크'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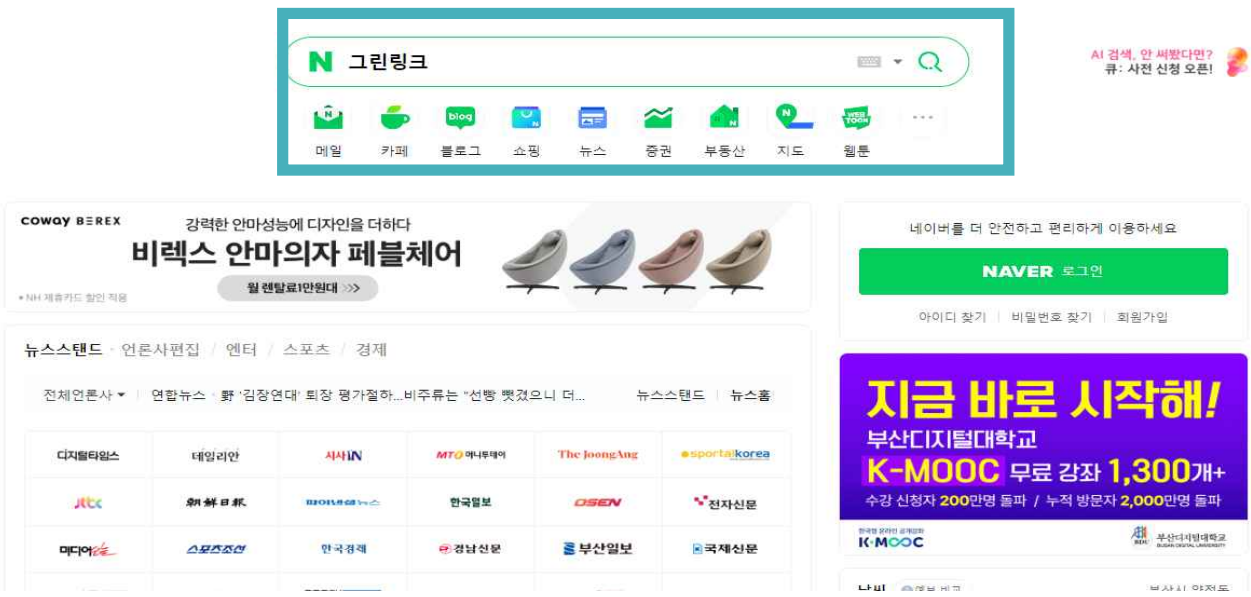

3) 사이트 접속

그린링크
VIEW
이미지
지식iN
인플루언서
동영상
쇼핑
www.greenlink.or.kr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 메인
소규모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 그린링크 운영관리 · 고객지원 · 실시간자료조회
• (수정)[설치(협력)업체] IoT 측정기기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 · 2023.11.30
• [설치업체대상]사업장 열람권한 관련 안내 · 2023.11.16
• (수정)[부재알림] 내부 행사로 인한 담당자 부재 알림(11월16일 15:00... · 2023.11.16
전체 목록 보기
그린링크 -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Greenlink란? ;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GreenLink, 그린링크)은 IoT기술을 활...
관련문서 더보기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로그인 | 회원가입 | KOR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소규모사업장
IoT
대기환경보전법
그린링크 운영관리
고객지원
운영 시스템
바로가기
실시간수신 자료조회
바로가기
사업장등록 상세정보
바로가기
Green Link
IoT
로그인
통합앱 인증
SMS인증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아이디 저장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재직확인서
계정폐지변경 신청서
그린링크 전송확인서
단계별 업무 절차도
사업장
GW업체
회원가입
사업장정보입력
배출구정보입력
시설정보입력
IoT신호전송
실시간자료조회
고객 콜센터
공지사항
자료마당
자주하는질문
관련소식
+더보기
(수정)[설치(협력)업체] IoT 측정기기 KS규격품 인증서 또…
2023.11.30
[설치업체대상]사업장 열람권한 관련 안내
2023.11.16
팝업존
1/1

4) 홈페이지 좌측 상단 회원가입 클릭 후 사업장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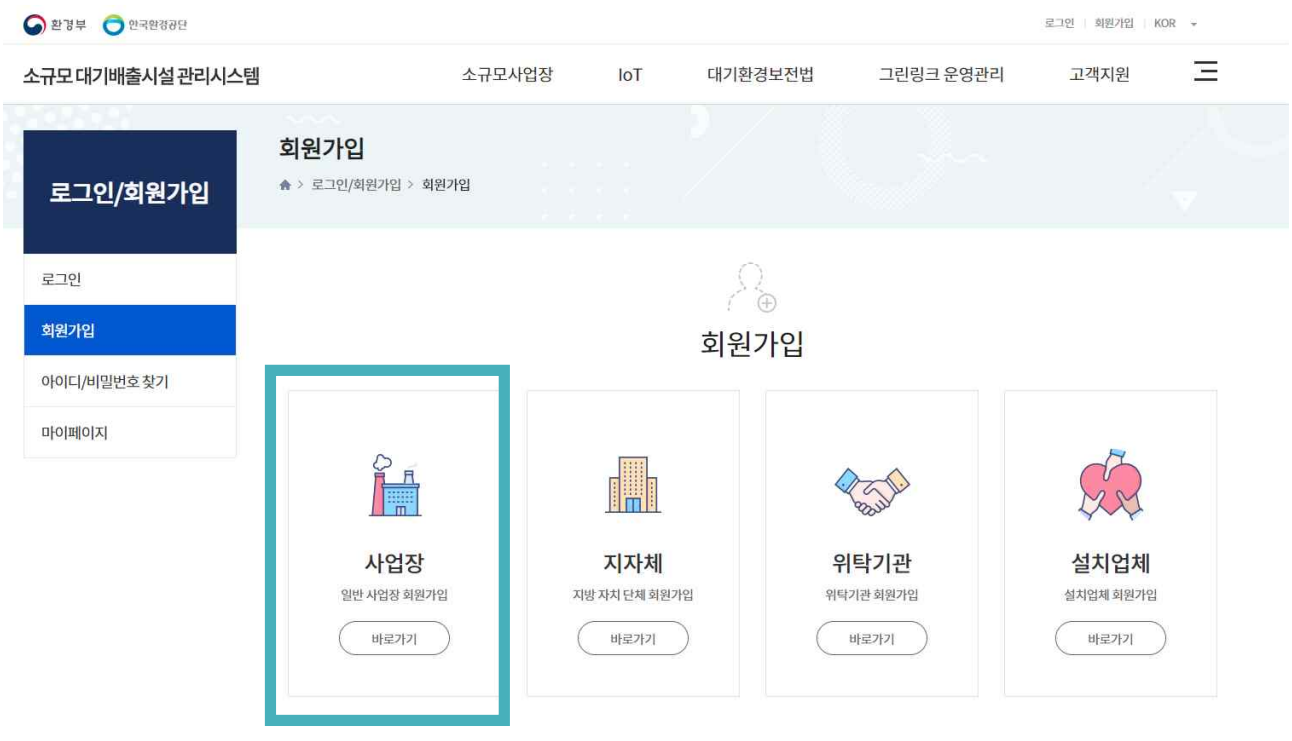

5) 회원가입 진행하기

(1) 이용약관, 개인정보방침 동의- 우측 ‘모두 동의’ V 체크 후 본인인증으로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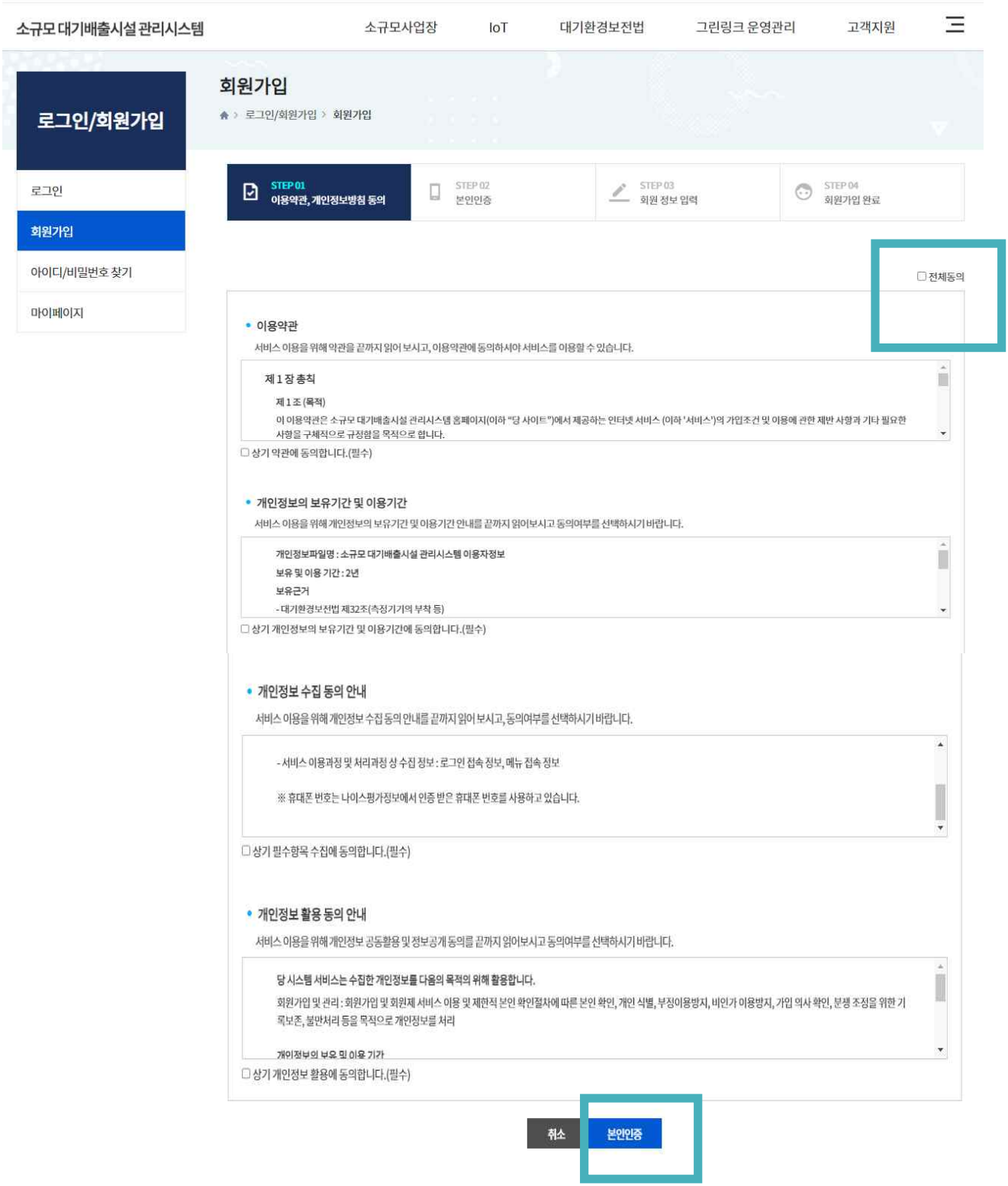

(2) 본인 인증하기 : 통신사 선택 후 전체 동의 체크 후
편하신 인증 방법 선택 후 인증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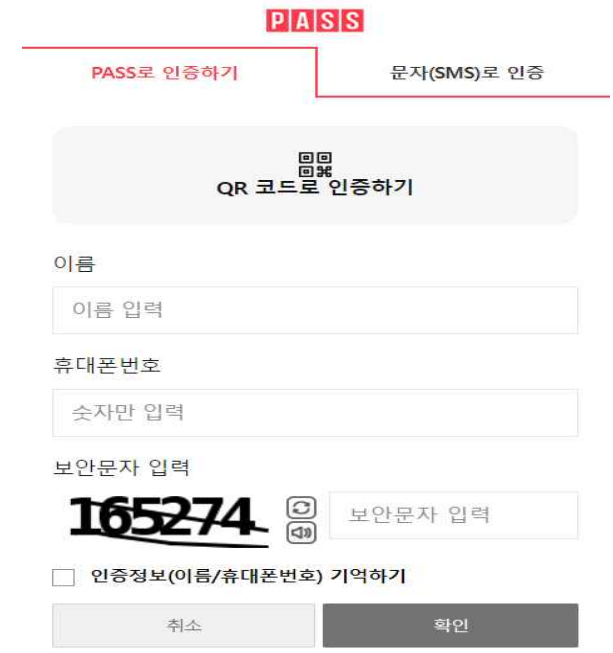

PASS 인증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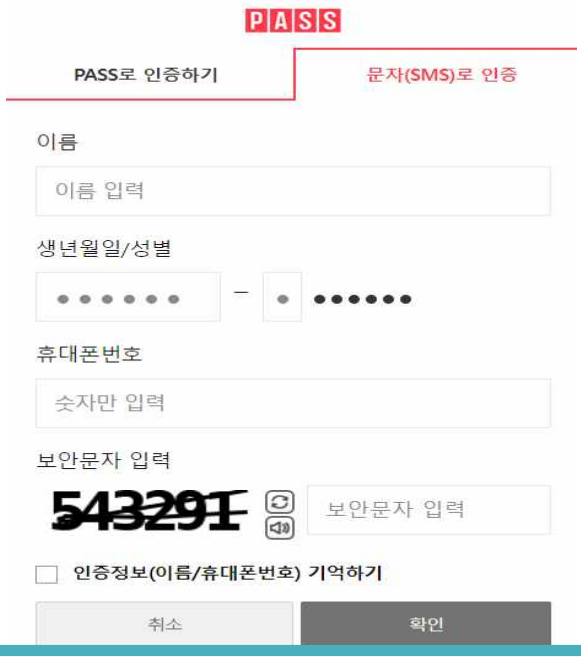

문자(SMS) 인증 화면

(3) 회원정보 입력 후 가입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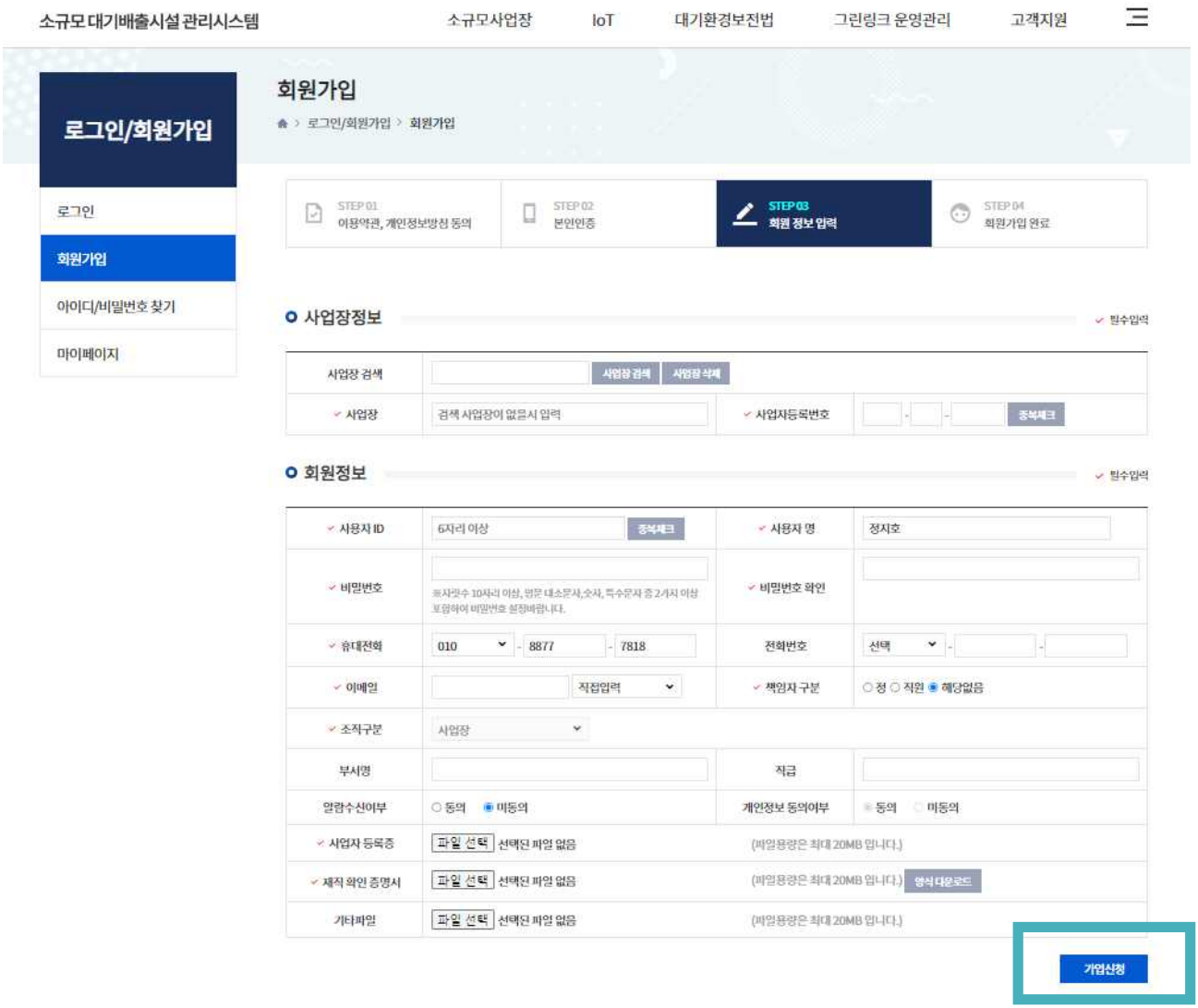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배포용) 그린링크 홈페이지>고객센터> 자료마당
‘(배포용) 그린링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_230106’ 참조

2.자체개선계획서 제출 방법

1) 그린링크(www.greenlink.or.kr) “접속” 및 “로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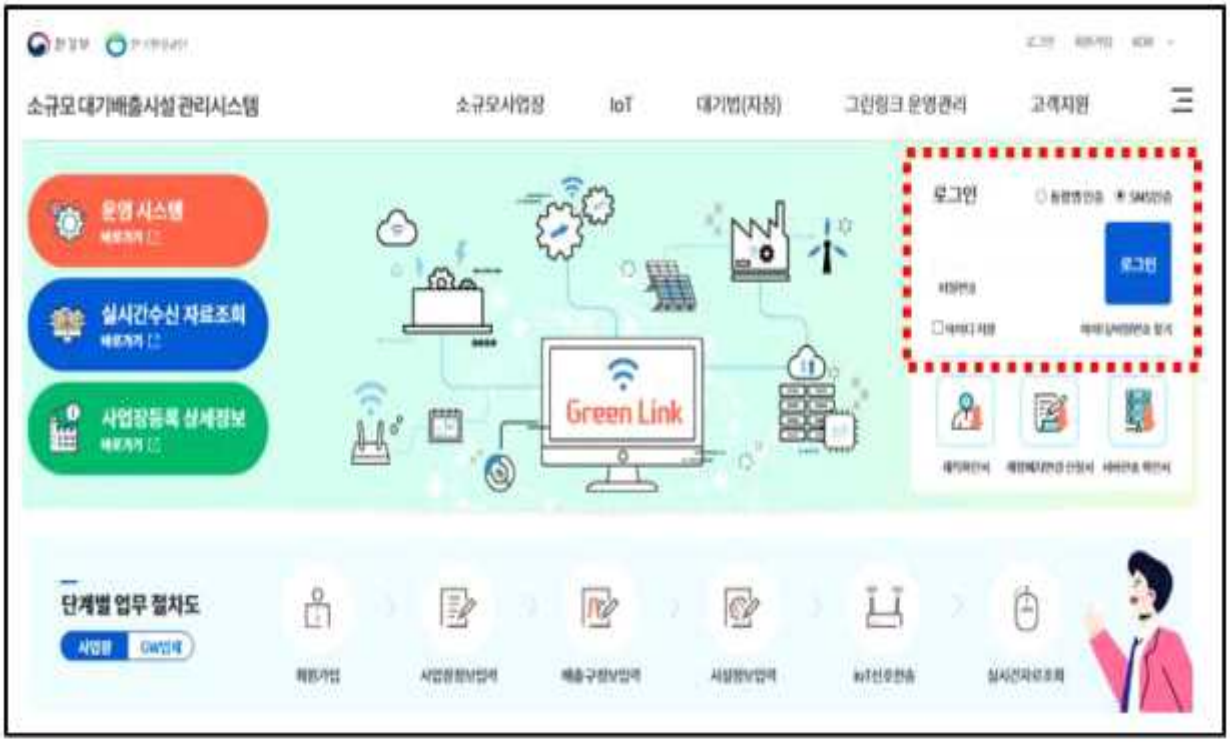

2) “실시간수신 자료조회 바로가기” 클릭

3) “행정자료” 클릭

4) “자체개선계획” 클릭

5) “자체개선계획 사항” 작성(사업장 ID, 사업장명, 작성자, 제목, 내용) → 첨부파일(**자체개선계획서**) 추가, 저장,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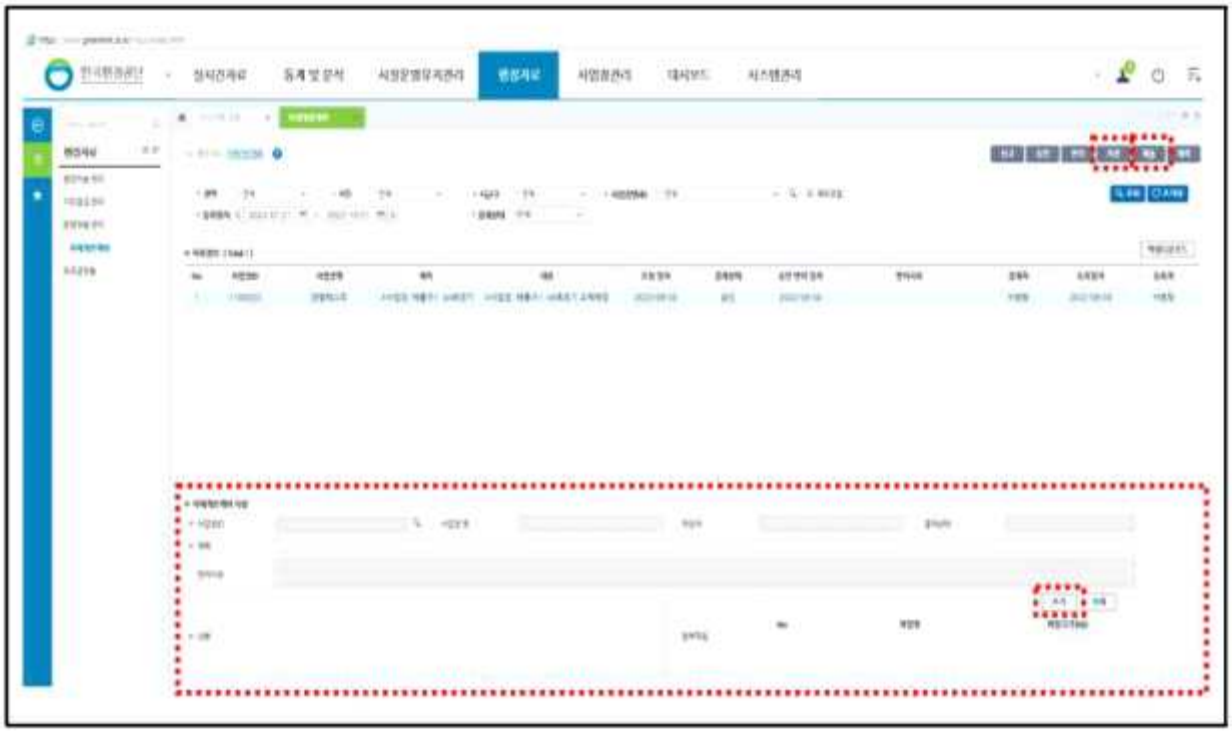

6) 자체개선계획 확인(해당 지자체 담당자) - “조회” 및 자체개선계획 확인

※ “반려” 필요시 지자체 등은 반려 사유를 입력하여 “반려” 처리 가능

※ 지자체가 자체개선계획을 확인한 경우 사업장 담당자에게 SMS가 발송됨 (예시) “사업장명(사업장 ID) 사업장 자체개선계획사항 제출 건이 [확인/반려] 되었습니다.”

3.자체개선완료 보고서 제출 방법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개선을 완료하면 개선 내용을 그린링크에 작성하고 **자체개선완료 보고서(**서식 5)를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는 개선 완료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1)그린링크(www.greenlink.or.kr) 접속 및 로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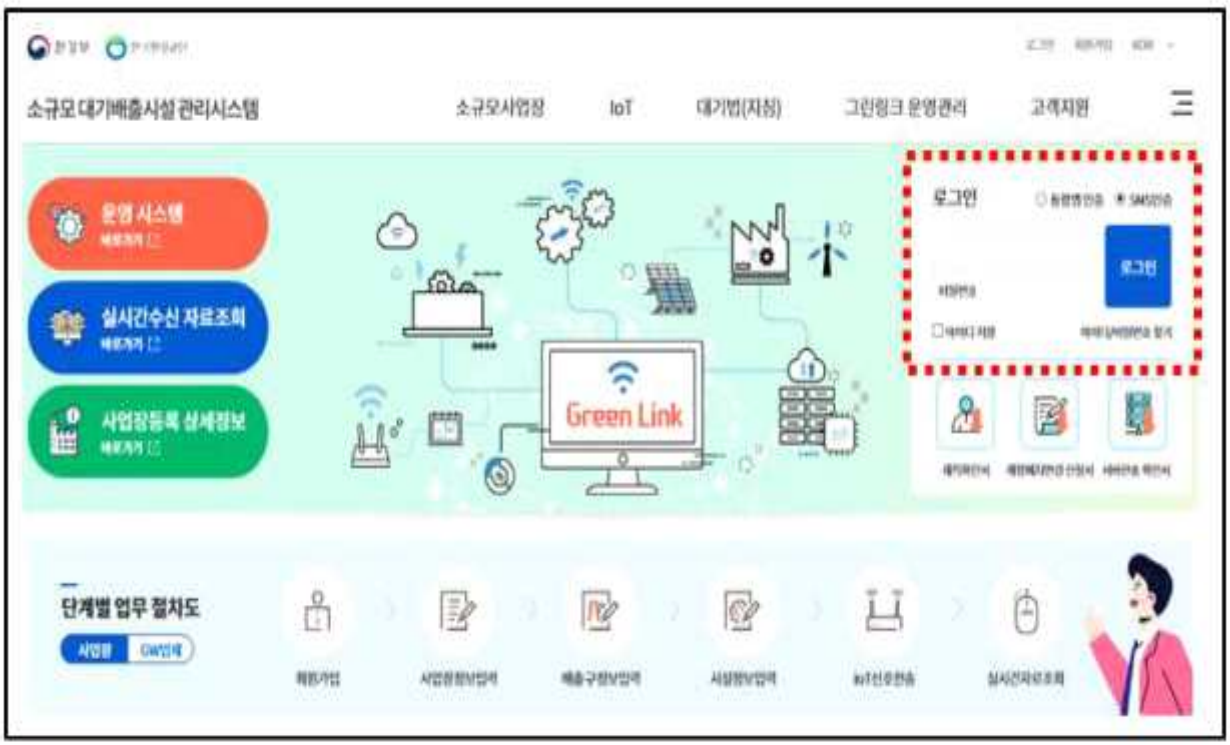

2) “실시간수신 자료조회 바로가기” 클릭

3) “행정자료” 클릭

4) “자체개선완료” 클릭

5) “자체개선완료 사항” 작성(사업장 ID, 사업장명, 작성자, 제목, 내용) → 첨부파일(자체개선완료 보고서) 추가, 저장,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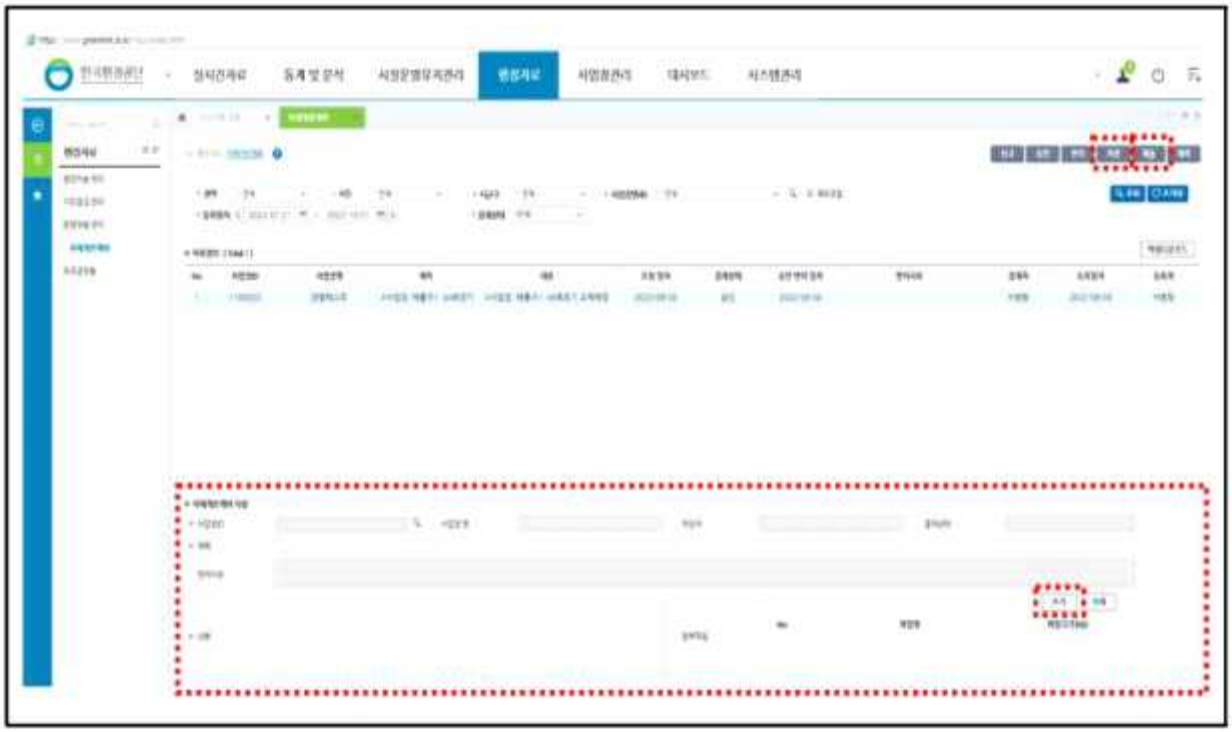

6) 자체개선완료 확인(해당 지자체 담당자) - “조회” 및 자체개선완료 확인